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령 사 협 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의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령사사업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정 의

제 1 조

정 의

이 협약에서 아래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1. <령사관>이란 총령사관, 령사관, 부령사관 또는 령사대리부를 의미한다.
2. <령사구역>이란 령사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령사관에 할당된 접수국의 지역을 의미한다.
3. <령사관책임자>란 파견국으로부터 령사관사업을 책임지고 말아보도록 위임받은 총령사, 령사, 부령사 또는 령사대리인을 의미한다.
4. <령사공무원>이란 령사관책임자를 포함하여 파견국으로부터 령사기능

의 수행을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5. <령사관직원>이란 령사관안에서 행정, 기술 또는 봉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 <령사관성원>이란 령사공무원과 령사관직원을 의미한다.

7. <가족>이란 령사관성원의 배우자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8. <령사관청사>란 소유권에 관계없이 령사관으로 리용되는 건물과 부분 건물 및 그에 속한 지면을 의미한다.

9. <령사관문서고>란 령사관의 모든 문건, 증명서, 편지, 전보, 암호책, 등록대장, 기호표, 인장, 록음테이프, 록화필림, 필림, 사진, 부기장부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하며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한다.

10. <파견국 배>란 파견국에 등록되어있으며 파견국의 국기를 띄우고있는 배를 의미한다. 이에 군용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파견국 비행기>란 파견국에 등록되어있으며 파견국의 국적표식이 있는 비행기를 의미한다. 이에 군용비행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2 장

령사관의 설치, 령사관성원의 임명

제 2 조

령사관의 설치

1. 령사관은 접수국의 동의밑에서만 그 나라 령역에 설치할수 있다.
2. 령사관의 소재지, 등급, 령사구역의 확정 및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변

동에 대하여서도 파견국과 접수국사이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령사관책임자의 임명과 승인

1. 파견국은 접수국에 령사관책임자를 파견하려고 하는 경우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령사관책임자의 임명과 관련한 파견장을 접수국에 내야 하며 파견장에는 령사관책임자의 이름, 직급, 령사관소재지, 등급 및 령사구역이 밝혀져있어야 한다.

2. 접수국은 령사관책임자의 임명과 관련한 파견장을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인가장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만일 접수국이 인가를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령사관책임자는 접수국으로부터 인가장을 받은후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인가장을 받기전에라도 접수국의 동의밑에 령사관책임자는 립시로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4. 접수국은 령사관책임자를 인가하거나 립시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다음 령사관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며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편의, 특권과 특전을 받을수 있도록 즉시 령사구역안의 주관당국에 통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5. 령사관책임자가 사정에 의하여 자기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결원된 경우 파견국은 그 령사관이나 접수국에 주재하는 다른 령사관의 령사공무원 혹은 접수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의 외교성원을 령사관립시책임자로 임명할수 있다.

이 경우 파견국은 사전에 령사관립시책임자의 이름과 전직에 대하여 접

수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령사관립시책임자는 이 협약의 조항들에 따라 령사관책임자에게 제공된 권리, 편의, 특권과 특전을 향유한다.

령사관립시책임자로 임명된 외교성원은 그가 받게 되어있는 외교 특권과 특전을 계속 향유한다.

제 4 조

도착 및 귀국에 대한 통지

령사관책임자는 제때에 아래의 사항들을 접수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령사관성원의 이름과 직위, 그의 도착과 완전귀국, 직무수행의 중지, 임기기간 그의 직위변동정형
2. 령사관성원가족의 이름과 국적, 그의 도착과 완전귀국정형 그리고 어떤 사람이 령사관성원의 가족으로 되었다는것과 아니라는 내용

제 5 조

령사관성원의 국적

1. 령사공무원은 파견국국민이어야 하며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파견국국민은 될수 없다.
2. 령사관직원은 파견국국민 또는 접수국국민이어야 한다.

제 6 조

령사관성원의 직무의 중지

1. 령사관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중지된다.

1) 파견국이 접수국에 그 성원의 직무가 중지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

2) 접수국이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어느 한 령사관성원을 환영할수 없는 인물로 인정하고 이를 파견국에 통지하는 경우 파견국은 그 인원을 소환하거나 령사관에서의 그의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이 조 제1항 2)의 경우 접수국은 파견국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파견국이 그 집행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1항 2)에 밝혀진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접수국은 그의 인가장과 령사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그를 다시는 령사관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령사의 기능

제 7 조

령사의 일반적기능

령사의 일반적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파견국 및 파견국공민과 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파견국공민

파 법인에게 방조를 제공한다.

2. 파견국과 접수국사이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과학기술, 려행관광 교류사업을 발전시키며 기타 다른 분야에서의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

3. 모든 합법적방법으로 접수국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과학기술, 려행관광사업 등 분야의 정세를 조사하며 그를 파견국에 보고할수 있다.

4. 접수국 법규범에 금지되어있지 않고 접수국이 반대하지 않는 파견국 으로부터 받은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제 8 조

국적 신청 및 등록

1. 령사공무원은 국적신청을 접수하며 등록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파견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접수한다.

2) 파견국공민을 등록한다.

3) 파견국공민의 출생과 사망을 등록하며 이와 관련한 통지서와 문건을 접수한다.

4) 접수국의 해당한 법규범에 저촉되지 않는한 파견국의 법규범에 따라 파견국공민들사이의 결혼과 리혼을 등록하며 결혼증발급사업을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접수국의 법규범을 지킬데 대한 당사자의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9 조

려권 및 사증 발급

령사공무원은 려권 및 사증 발급사업 등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파견국국민에게 려권 또는 기타 다른 려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려권 및 기타 다른 려행증명서들을 변경, 취소할수 있다.
2. 파견국으로 가거나 파견국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사증과 기타 증명문건에 대한 발급 및 수속 사업을 한다.

제 10 조

공증과 인증

1. 령사공무원은 파견국의 법규범에 따라 공증과 인증 사업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의의 국적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파견국에서 사용하는 해당되는 문서들을 발급한다.

2) 파견국국민 또는 법인의 요구에 따라 접수국경내 혹은 경외에서 사용하는 해당되는 문서들을 발급한다.

3) 파견국 또는 접수국 표준어로 번역한 문건에 대하여 원문과 번역문이 같다는것을 증명한다.

4) 접수국이 반대하지 않는 파견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기타 공증사업을 수행한다.

5) 파견국 또는 접수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문건에 있는 수표와 공인을 인증한다.

2. 령사공무원이 공증하는 문서, 문서부분, 발취책, 번역문 및 그가 인증하는 문서는 파견국의 공식문서 또는 공식적으로 증명된 문서로 간주된다.

만일 이러한 류의 문서가 접수국에서 사용될 때 그것들은 접수국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11 조

파견국공민과의 연계

1. 령사공무원은 령사구역내에서 파견국공민과 연계를 가지며 만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접수국은 파견국공민이 령사관과 연계를 가지며 령사관에 들어가는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2. 파견국공민이 령사구역내에서 체포 혹은 구류되었을 때 접수국주관당국은 그 공민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로부터 7일내에 령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령사공무원은 체포, 구류, 감금된 파견국공민을 방문하여 만나볼수 있으며 그와 담화하거나 통신상연계를 가질수 있으며 그에게 법률상방조를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접수국주관당국은 령사공무원으로부터 방문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3일내에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후 정기적으로 방문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4. 접수국주관당국은 이 조 제2,3항에 규정된 권리를 체포, 구류, 감금

된 파견국국민에게 인차 알려주어야 한다.

5. 령사공무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때 접수국의 해당 법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 12 조

보좌 및 후견

1. 령사구역내에서 미성년인 혹은 충분한 행위능력이 없는 파견국국민이 보좌인 또는 후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국주관당국은 령사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의 법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미성년인 또는 충분한 행위능력이 없는 파견국국민의 리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보좌인 또는 후견인을 추천, 선정해주며 추천, 선정된 사람들의 보좌 및 후견 정형에 대하여 감독한다.

제 13 조

파견국국민 또는 법인의 대표

1. 파견국국민 또는 법인이 현지에 없거나 다른 원인으로 자기의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수 없는 경우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재판소 혹은 기타 기관앞에서 그 국민 또는 법인을 대표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당한 대표를 알선하여줄 수 있다.

2. 령사공무원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때 접수국의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파견국국민 또는 범인에 대한 협조

1.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에서의 파견국국민 또는 범인에 대하여 료해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방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2.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주관당국에 파견국국민의 행처를 찾는 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접수국주관당국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에서 파견국국민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이 접수국의 법규범을 지키도록 방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4. 접수국주관당국은 파견국국민의 사망, 실종, 중상 등 뜻밖의 사고에 대하여 알았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령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주관당국에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난당한 국민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권리가 있다.

5. 접수국법규범에 저촉되지 않는한 령사공무원은 파견국국민 또는 범인의 증명문건, 현금, 귀중품을 접수하며 립시보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유산보호조치

1. 접수국주관당국은 파견국국민이 접수국에서 사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령사관에 알려야 하며 령사관의 요구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기타 문건사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는 파견국공민이 사망되었으며 그의 유산이 접수국에 있으나 유산상속자 혹은 유언집행인이 접수국에 없는 경우 접수국주관당국은 이를 빨리 령사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접수국주관당국이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유산을 접수보관하고있을 경우 령사공무원은 그곳에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4. 파견국의 어느 한 공민이 유산상속자이거나 유언을 받은 사람인 경우 접수국에 남긴 임의의 국적을 가진 사망자의 유산에 대하여서도 상속받거나 인수할 권리가 있으며 그 파견국공민이 접수국경내에 없는 경우 접수국주관당국은 그 공민이 상속하거나 인수하여야 할 유산에 대한 사항을 령사관에 알려야 한다.

5. 파견국공민 또는 법인이 접수국경내의 어느 한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거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또는 그의 대표가 유산소송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령사공무원은 직접 또는 자기의 대표를 통하여 접수국 재판소나 기타 기관 앞에서 그 공민 또는 법인을 대표할수 있다.

6.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지 않는 파견국공민이 접수국에서 받아야 하는 유산과 유물을 넘겨받아 해당한 공민에게 넘겨줄 권리가 있다.

7.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지 않는 파견국공민이 접수국에서 사망하였을 때 그의 친척 또는 대표가 접수국에 없는 경우 령사공무원은 공민의 상속인, 유언집행인 혹은 기타 이런 재산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즉시 그 공민이 남긴 돈과 문건 그리고 개인용 물품을 임시보관할 권한이 있다.

8. 령사공무원은 이 조 제5, 6, 7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접수국의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과건국배에 대한 협조

1.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의 내수, 항구, 령해 또는 정박지에 있는 과건국 배와 그 선장 및 선원들에게 협조를 제공할수 있을뿐아니라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배에 올라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며 선박, 화물 및 항행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수 있다.

2) 접수국주관당국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배가 항행하는 기간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다.

3) 과건국의 법규범에 따라 로임 그리고 로동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포함하여 선장과 선원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

4) 선장과 선원의 방문을 접수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위한 치료사업 혹은 본국에로의 귀국을 보장하여준다.

5) 배와 관련한 문서를 접수, 조사검열, 발급, 서명 혹은 인증한다.

6) 과건국주관당국이 위임하는 배와 관계된 기타 임무들을 처리한다.

2. 령사공무원은 이 조에 지적된 기능을 수행할 때 접수국의 법규범을 지켜야 하며 접수국의 해당기관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제 17 조

과건국배에 강제적조치를 실시할 때의 보호

1. 접수국재판소 또는 다른 주관기관이 과건국배에 대하여 혹은 과건국 배우에서 강제적조치를 취하거나 중요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령사공무원이나 그의 대표가 조치를 취하는 장소에 나타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드

시 사전에 령사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정황이 긴급하여 사전에 통지를 할수 없는 경우 접수국주관당국은 조치를 취한후에 즉시 령사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취한 조치의 전말에 대한 것을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접수국주관당국이 륵지에서 선장 혹은 선원에 게 우와 같은 행동을 취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 2항의 규정은 접수국주관당국이 진행하는 세관, 항구관리, 검역, 국경통행검사와 관련한 정기적인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수국주관당국이 해상안전을 보장하거나 수역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4. 선장 또는 령사공무원의 요구와 동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주관당국이 접수국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질서가 파괴당하지 않는 정황하에서는 파견국배의 내부분제에 간섭할수 없다.

제 18 조

파손된 파견국배에 대한 협조

1. 파견국배가 접수국의 내수, 령해 또는 그의 부근해역에서 침몰되거나 좌초되는 등 중대한 해난사고를 당하였을 때 접수국주관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이를 령사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선인원들, 배, 화물 및 기타 재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2. 령사공무원은 사고가 발생한 파견국 배, 선원 및 려객에게 협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접수국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3. 사고가 난 파견국배 또는 그 배에 속하는 물품과 화물이 접수국해안 부근이나 접수국항구로 들어오고있으나 선장, 선주, 선박회사대리인과 해당

보험일군이 모두 그 장소에 없는 경우 혹은 보관 및 처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접수국주관당국은 이를 신속히 령사관에 알려야 한다.

령사공무원은 선주를 대표하여 해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고가 난 파견국배 및 그 화물, 식료품을 접수국경내에서 처분하지 않는한 접수국은 관세 혹은 그와 유사한 비용을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 조

비파견국배에 대한 방문

선장의 동의를 받고 접수국항구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령사공무원 또는 그의 대표는 파견국의 항구나 정박지로 가는 비파견국배를 방문할 수 있다.

제 20 조

파견국비행기

이 협약에서 파견국배에 관한 규정은 파견국비행기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접수국과 파견국사이에 현재 시행되고있는 쌍무적 또는 쌍방이 참가한 다방협약의 조항들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제 21 조

사법문건의 송달

령사공무원은 접수국법규범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파견국 공민 또는 법인에게서 증언을 받으며 사법문건과 사법 이외의 문건을 송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2 조

형사기능을 수행하는 구역

형사공무원은 형사구역안에서만 형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사공무원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조건에서 형사구역밖에서도 형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접수국당국과의 연계

형사공무원은 형사기능을 수행할 때 다음의 기관들과 연계를 가질 수 있다.

1. 형사구역안의 지방주관당국
2. 형사구역밖의 지방주관당국. 이 경우에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접수국의 중앙주관당국. 이 경우에는 접수국의 범규범과 관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해당된다.

제 24 조

대사관의 형사기능수행

1. 접수국주재 파견국대사관은 형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외교성원은 이 협약에 규정된 형사공무원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편의, 특권과 특전을 향유한다.

2. 파견국대사관은 령사기능을 수행하는 외교성원의 이름과 직위를 접수국 외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령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외교성원은 외교성원의 신분 에 따라 향유할수 있는 권리, 편의, 특권과 특전을 계속 향유한다.

제 4 장

편의, 특권과 특전

제 25 조

령사관을 위한 편의제공

접수국은 령사관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 26 조

령사관 청사 및 주택의 취득

1. 접수국법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파견국 또는 그의 대표는 령사관청사와 령사관성원의 주택으로 사용할 건물과 부분건물, 그에 속한 지면을 구입, 임대, 건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접수국국민 또는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는 파견국국민이 령사관직원으로 된 사람들의 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접수국은 령사관청사의 취득을 위한 파견국의 사업을 협조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서는 령사관성원들을 위하여 적당한 주택을 취득하도록 파견국에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국기와 국장의 사용

1. 파견국은 령사관청사에 국장과 파견국 및 접수국 문자로 된 령사관 명칭을 표식한 간판을 달수 있다.
2. 파견국은 령사관청사, 령사관책임자의 주택과 령사관책임자가 공무 집행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파견국국기를 띄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28 조

령사관청사와 령사공무원주택에 대한 불가침

1. 령사관청사는 불가침이다.
접수국당국은 령사관책임자나 파견국대사관 책임자 또는 그들이 임명한 사람의 승인이 없이는 령사관청사안에 들어갈수 없다.
2. 접수국은 령사관청사가 침범과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며 령사관의 안전에 지장을 받거나 령사관의 존엄이 손상되는것을 방지할 특별한 책임을 진다.
3. 령사관청사와 령사관의 설비, 재산과 교통수단은 징발에서 면제 된다.

만일 접수국이 국방 또는 공공목적의 필요로부터 반드시 징발하려고 할 때에는 령사관의 기능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때에 파견국에 해당한 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4. 령사관청사를 령사기능수행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다른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

5.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령사공무원의 주택에도 적용된다.

제 29 조

령사관문서고에 대한 불가침

령사관문서고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제 30 조

통신의 자유

1. 접수국은 령사관의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통신의 자유를 허용 및 보호하여야 한다.

령사관은 파견국정부, 파견국대사관, 파견국의 기타 령사관과 암호전신, 외교신서사 또는 령사신서사, 외교우편물주머니 및 령사우편물주머니 등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여 통신할수 있다.

그러나 령사관은 접수국의 승인밑에서만 무전기를 설치하고 사용할수 있다.

2. 령사관이 주고받는 문건, 편지, 전보 등 공식우편물은 불가침이다.

령사우편물주머니는 개봉하거나 지체시킬수 없다.

령사우편물주머니에는 식별할수 있는 외부표식이 붙어있어야 하며 거기에는 공문, 자료, 사무용품에 한하여서만 넣을수 있다.

만일 접수국주관당국이 우편물주머니안에 상술한 규정이외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인정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파견국이 위임한 대표에게 해당 당국앞에서 우편물주머니를 개봉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거절당하는 경우 우편물주머니를 원래의 발송지로 다시 돌려보낸다.

3. 령사신서사는 반드시 파견국국민이어야 하며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는 파견국국민은 될수 없다.

령사신서사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문건을 소지하여야 한다. 령사신서사는 접수국경내에서 외교신서사와 동일한 권리, 편의, 특권과 특전을 향유한다.

4. 령사우편물주머니를 파견국비행기의 책임비행사 혹은 파견국배의 선장에게 위탁휴대시킬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책임비행사나 선장은 우편물주머니개수가 기록된 공식증명문건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령사신서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령사공무원은 접수국 해당당국과의 합의가 있는 조건에서 책임비행사나 선장과 령사우편물을 직접 자유로이 주고 받을수 있다.

제 31 조

령사수수료와 수속비

1. 령사관은 접수국경내에서 파견국법규범에 규정된 령사사업수수료와

수속비를 받을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령사사업수수료와 수속비로 수득된 금액과 령수중은 접수국의 일체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3. 접수국은 령사관이 이 조 제1항에 서술된 령사사업수수료와 수속비로 수득된 금액을 파견국에 송금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3 2 조

행동의 자유

접수국은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있는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령사관 성원 및 그 가족의 활동과 려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3 조

령사공무원의 인신불가침

령사공무원의 인신은 불가침이며 체포 또는 구류되지 않는다.

접수국은 령사공무원을 옹당하게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신, 자유, 존엄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4 조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1. 령사공무원은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아래의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파견국대표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다는것을 밝히지 않아 일어난 소송

2) 접수국안에서 교통수단에 의한 손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3) 접수국경내에서의 개인부동산과 관련한 소송

그러나 파견국대표의 자격으로 령사관을 위하여 가지고있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개인의 상속과 관련되는 소송

5) 접수국에서 진행되고있는 공무적범주이외의 그 어떤 전문적인 직업 또는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송

2. 접수국은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안전들에 대하여 집행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령사공무원의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권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3. 령사관직원의 공적업무수행은 접수국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 조 제1항의 1), 2)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은 제외된다.

4. 접수국이 령사관직원을 체포 또는 구류하는 경우 즉시 령사관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증인의 의무

1. 령사공무원은 증인의 신분으로 증언할 의무가 없다.

2. 령사관직원은 접수국 사법 또는 행정사건처리현장에 증인으로 호출될 수 있다. 이 조 제3항에 지적된 정황이외의 경우 증언을 거절할수 없다.

3. 령사관직원은 자신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문건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령사관직원은 감정인의 신분으로 파견국의 법률에 대한 증언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4. 접수국주관당국이 령사관직원의 증언을 요구할 경우 그의 공무집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한한 그의 주택이나 령사관청사에서 증언을 받거나 그의 서면진술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로동 및 의무의 면제

령사관성원은 접수국에서 취하는 임의의 형식의 개별적로동, 사회적복무 및 군사적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은 또한 외국공민등록 및 거주허가와 관련한 접수국의 법규범에 규정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 37 조

동산과 부동산의 면세

접수국은 다음 항목의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1. 파견국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구입, 임대하였거나 건설한 령사관청사와 령사관성원의 주택 및 그와 관련된 교역 및 계약증서

2. 전문령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있거나 임대한것, 기타 방식으로 차지하고있는 령사관의 설비와 교통수단

제 38 조

령사관성원에 대한 면세

령사관성원은 사람,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접수국의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행정적인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상품가격과 봉사료에 포함되어있는 간접세
2. 접수국경내에 있는 사유부동산에 대한 세금 그러나 이 협약 제37조 제1항 1)의 규정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접수국이 부과하는 유산세, 유산취득세 또는 상속세와 양도세 그러나 이 협약 제40조에 규정된자는 제외된다.
4. 접수국에서 취득한 공적용무이외의 사적수입에 대한 소득세
5. 특정한 봉사제공에서 얻은 수입
6. 등록비, 재판수속비 또는 기록비, 저당세, 수입인지세 그러나 이 협약 제37조에 규정된자는 제외된다.

제 39 조

관세와 검사의 면제

1. 접수국은 본국의 법규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들에 대하여 반출입을 허용하며 모든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보관비, 운반비 및 이와 유사한 봉사비는 제외된다.

- 1) 령사관이 공적용무에 쓰는 물품 및 교통수단
- 2) 령사공무원의 개인물품
- 3) 령사관직원이 처음 부임되어올 때 가지고온 가정설비 및 일용품을 포함한 개인물품

2. 이 조 제1항 2), 3)에 지적된 물품들은 해당인원에게 직접 수요되는 수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령사공무원의 개인집은 검사에서 면제된다.

접수국주관당국은 짐속에 이 조 제1항 2)에 지적된 물품에 속하는것이 아닌 물품, 접수국법규범에 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 검역법에 의하여 관제하기로 되어있는 물품이 들어있다고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검사할수 있다.

검사는 반드시 해당한 령사공무원이나 그 대표가 현장에서 립회하는 조건에서만 진행할수 있다

제 4 0 조

령사관성원의 유산

령사관성원 혹은 그 가족이 사망되었을 경우 접수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동산을 국경밖으로 반출하는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망자가 접수국경내에서 획득한것이지만 사망당시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제외된다.

2. 사망자의 동산에 대한 유산세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제 4 1 조

가족의 특권과 특전

이 협약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자를 제외한 령사공무원과 령사관직원의 가족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령사공무원과 령사관직원이 향유하게 되어있는 특권과 특전을 향유한다.

제 4 2 조

특권과 특전을 향유할수 없는 인원

1. 접수국국민 혹은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는 파견국국민, 접수국국내에서 보수를 받고 개인에게 종사하는 령사관직원은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특전을 향유할수 없다.

그러나 제35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2. 접수국국민 혹은 접수국에 항시적으로 거주하고있는 파견국국민 그리고 접수국국내에서 보수를 받고 개인에게 종사하는 령사관직원의 가족은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특전을 향유할수 없다.

제 4 3 조

특권과 특전의 시작과 종말

1. 령사관성원이 취임하기 위하여 접수국국경에 들어선 때로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특전을 향유하게 된다.

이미 접수국경내에 있으면 그가 령사관직무에 취임한 때로부터 향유하게 된다.

2. 령사관성원의 가족은 령사관성원이 특권과 특전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혹은 본인이 접수국국경에 들어선 시각부터 혹은 그가 령사관성원의 가족으로 된 시각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특전을 향유하게 된다.

3. 령사관성원으로서의 직무가 끝났어도 본인과 그 가족의 특권과 특전은 그가 접수국국경을 떠날 때까지 혹은 국경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한이 끝났을 때 중지된다.

령사관성원의 가족이 더는 그의 가족으로 되지 않을 때 그의 특권과 특전은 그때로부터 중지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합리적인 기간에 접수국을 떠나려 한다면 그의 특권과 특전은 그가 국경을 떠날 때까지 연장된다.

4. 령사관성원이 사망되었을 경우 그의 가족의 특권과 특전은 그가 접수국국경을 떠날 때까지 혹은 그가 국경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한이 끝났을 때까지 계속된다.

제 44 조

특권과 특전의 포기

1. 파견국은 이 협약 제34조와 제35조에 규정된 해당성원이 향유할수 있는 임의의 조항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매번 포기할 때마다 서면으로 접수국에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면제의 특전을 누릴수 있는 인원이 만약 관할권면제의 사항과 관련하여 주동적으로 기소할 때 이 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기소에 대하여 관할권면제의 특전을 주장할수 없다.

3. 민사 혹은 행정소송과정에서 특전을 포기하는것을 사법판결집행에 대한 특전을 묵살, 포기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사법판결집행에 대한 특전포기는 반드시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

접수국범규범에 대한 존중

1. 이 협약에 따라 특권과 특전을 향유하는 성원은 그 특권과 특전을 향유하는데 지장이 없는한 접수국범규범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파견국국민인 령사관성원은 공무집행을 제외하고는 접수국경내에서 기타 직업 또는 상업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3. 령사관과 령사관성원 및 그 가족이 가지고있는 교통수단은 접수국의 보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최 종 규 정

제 46 조

비준, 효력발생, 폐기

1.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평양에서 서로 교환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를 서로 교환한 날부터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협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폐기할데 대한 의견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개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지하지 않는한 이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은 1985년 11월 26일 베이징에서 서명되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권 대 표

전 권 대 표